

시보는 공문시행에 대체하는 효력을 갖습니다.

www.namwon.go.kr

제10호 2018. 2. 23(금)

선 람	기관의 장

고시

- 남원시 고시 제2018- 22호 남원시 특별교통수단 이용요금 변경 고시 ----- 1
- 남원시 고시 제2018- 23호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 고시 ----- 2

공고

- 남원시 공고 제2018- 343호 남원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공고 ----- 5
- 남원시 공고 제2018- 345호 남원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공고 ----- 22

회 람										
--------	--	--	--	--	--	--	--	--	--	--

남원시 고시 제2018-22호

남원시 특별교통수단 이용요금 변경 고시

「남원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 제14조 제2항에 따라 남원시 특별교통수단 이용요금 변경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8. 2. 20.

남 원 시 장

1. 시 행 일 : 2018년 3월 1일(목) 00:00부터
2. 변경사유 : 2018년 전라북도 특별교통수단 운영규정 개선권고안 반영
3. 특별교통수단 이용요금

구분	변경 전 (2018.02.28.까지)	변경 후 (2018.03.01.부터)	비고
기본요금	2km까지 1,400원	2km까지 1,400원	현행동일
거리요금	2km초과 시 296m당 100원	2km초과 시 148m당 30원	
시간요금	2km초과 시 15km/h이하 70초당 100원	삭제	
대기요금	- 1시간까지 무료 - 1~3시간 이내 10,000원 - 3시간 초과 시 시간당 5,000원	- 1시간까지 무료 - 1~3시간 이내 10,000원 - 3시간 초과 시 시간당 5,000원	현행동일

4. 적용기준

- 가. 관내/관외 모두 동일한 요금을 적용한다.
- 나. 미터기에 나타나는 요금은 100원 단위로 징수한다.

5. 문 의 처 : 남원시 교통과 (☎063-620-6565)

남원시 고시 제2018 - 23호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 고시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6조(붕괴위험지역의 지정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붕괴위험지역 지정·고시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을 지정·고시합니다.

2018년 2월 23일

남 원 시 장

1.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 범위 등

지구명	위치	지정내용				관리자	지정 사유	비고
		유형	등급	연장(m)	높이(m)			
금지서매지구	전북 남원시 금지면 서매리 481번지 일원	붕괴위험	D	270	9	남원시장	붕괴위험지역 정비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2. 붕괴위험지역에서 제한되는 행위 또는 금지사항(『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 토석의 굴착을 수반하는 관로(管路)의 설치, 철탑의 설치, 도로·교량 등 구조물의 설치 행위
- 토석의 굴착을 수반하는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개축하는 행위
- 옹벽·축대 및 측구(側溝) 등을 변경하는 행위
- 수목을 벌채하거나 잔디 등을 제거하는 행위
- 그 밖에 급경사지의 안정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단, 인·허가 등을 하고자 하는 때는 미리 관리기관(안전재난과)과 협의를 하여야 하며,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에 따라 사전재해영향성검토에 관하여 사전협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붕괴위험지역에 대한 정비계획 : 붕괴위험지역 중장기 계획에 반영 보수·보강 추진

4. 붕괴위험지역 지정일 : 2018. 2. 23.(금)

5. 문의

- 우편 : (우)590-701 전북 남원시 시청로 60(남원시청 안전재난과)
- 전화 : 063) 620-6963 · 팩스 : 063) 620-6747

붙임 1. 편입토지조서 1부.

2.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 위치도 및 현황사진 1부. 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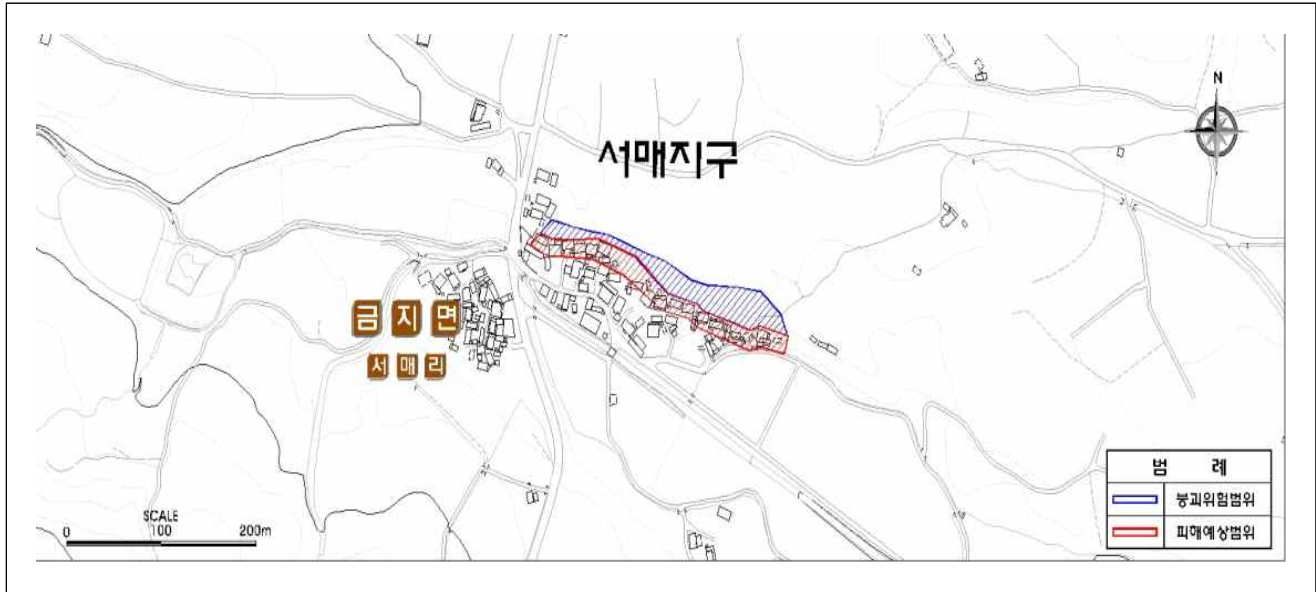
편입토지조서

일련 번호	위치	지정개요				지정사유	소유자	비 고
		면적(m ²)		유형	등급			
		지적 면적	지정 면적					
계	16필지	10,008	7,350					
1	금지면 서매리 459	241	45	붕괴위험	D	사면붕괴위험	신동*	
2	금지면 서매리 483	377	377	붕괴위험	D	사면붕괴위험	김선*	
3	금지면 서매리 484	228	228	붕괴위험	D	사면붕괴위험	공경*	
4	금지면 서매리 485	370	370	붕괴위험	D	사면붕괴위험	공성*	
5	금지면 서매리 486	383	383	붕괴위험	D	사면붕괴위험	최옥*	
6	금지면 서매리 487	585	585	붕괴위험	D	사면붕괴위험	박명*	
7	금지면 서매리 488	939	939	붕괴위험	D	사면붕괴위험	나강*	
8	금지면 서매리 502	393	393	붕괴위험	D	사면붕괴위험	지강*	
9	금지면 서매리 503	640	640	붕괴위험	D	사면붕괴위험	장덕*	
10	금지면 서매리 504	774	774	붕괴위험	D	사면붕괴위험	공삼*	
11	금지면 서매리 505	536	536	붕괴위험	D	사면붕괴위험	나길*	
12	금지면 서매리 506	691	691	붕괴위험	D	사면붕괴위험	이명*	
13	금지면 서매리 522	198	198	붕괴위험	D	사면붕괴위험	하은*	
14	금지면 서매리 520	860	860	붕괴위험	D	사면붕괴위험	이정*	
15	금지면 서매리 547	281	281	붕괴위험	D	사면붕괴위험	김병*	
16	금지면 서매리 1222-0000	2,512	51	붕괴위험	D	사면붕괴위험	국(건설부)	

※ 추후 정비사업을 위한 측량 시 필지 및 지정면적 변경될 수 있음

□ 위치도 및 현황사진

○ 위치도



○ 현황사진



남원시 공고 제2018-343호

「남원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23일

남 원 시 장

남원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지방세기본법」개정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을 의무적으로 배치하여 납세자 권리 보호업무를 수행하고 업무처리 방법 등 제도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제명을 「남원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를 「남원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로 변경
- 나. 납세자보호관의 설치부서, 업무 및 권한 등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안 제7조)
- 다.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0조~안 제19조)
- 라. 세무조사 기간연장 및 연기, 권리보호요청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20조 ~안 제28조)
- 마. 납세자권리현장, 제도개선 과제 발굴, 기한의 연장, 가산세의 감면, 징수유예 등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29조~안 제39조)

3. 의견제출

-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8년 3월 15일까지 의견을 남원시장(참조:재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제출 사항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 55738

남원시 시청로 60(도통동) 남원시청 재정과

라. 의견 제출방법 : 서면, 팩스(063-620-6710) 및 직접방문 등

4. 기타

○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청 재정과(☎ 063-620-627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서

1. 의견제출 목록		「남원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2. 제출자	성명(명칭)	
	주 소	
3. 의 견		
4. 기 타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의견제출 및 처리)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8년 월 일

의견서 제출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전 화 :

남원시장 귀하

비 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 할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를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남원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남원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2에서 위임된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세무부서”란 지방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2. “세무부서장”이란 지방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3. “납세자보호관”이란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7조제2항에 따라 납세자의 권익보호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4. “고충민원”이란 처분이 완료된 사항으로써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납세자의 권리·이익이 침해되었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준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한다.

5. “권리보호요청”이란 처분이 완료되기 전 사항으로써 세무조사 및 일반 지방세 행정 진행 과정에서 지방세 공무원의 법령 위반, 재량 남용 등으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거나 권리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 납세자(세무대리인)가 관할 납세자보호관에게 권리의 구제를 요청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 제1항외의 용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지방세관계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예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납세자 권리보호업무에 관하여 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납세자보호관

제4조(납세자보호관의 설치) ① 영 제51조의2제3항에 따라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하는 납세자보호관은 기획실에 둔다.

② 시장은 납세자보호관을 보좌하는 사람으로 납세자보호담당자를 둘 수 있다.

제5조(납세자보호관의 선발기준) ① 시장은 소속직원 중에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구비한 사람을 납세자보호관으로 임명한다. 다만, 인력 수급 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2호에서 정하는 요건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직급기준 : 6급

2. 경력기준 : 지방세 업무경력 5년 이상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세무사, 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로서 조세·법률·회계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을 납세자보호관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사람은 납세자보호관 임명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적극적인 업무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직무상 과실로 부득이하게 징계를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견책 이상의 징계요구 중 이거나 견책 이상의 징계를 받아 특별사면·일반사면을 받지 않은 경우
2.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4조 승진임용의 제한에 따른 일정기간 내에 있는 경우

제6조(납세자보호관의 업무) 법 제77조제2항 및 영 제51조의2에 따른 납세자보호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및 세무 상담
2. 세무조사·체납처분 등 권리보호요청에 관한 사항
3. 납세자권리현장의 준수 등에 관한 사항
4.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에 관한 사항
5. 기한의 연장신청에 대한 처리, 가산세 감면신청에 대한 처리, 징수유예 등의 신청에 대한 처리

제7조(납세자보호관의 권한) ① 영 51조의2제2항에 따른 납세자보호관의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요구

- 2. 위법·부당한 세무조사의 일시중지 요구 및 중지요구
 - 3. 위법·부당한 처분이 행하여 질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처분 절차의 일시중지 요구
 - 4. 근거가 불명확한 처분에 대한 소명요구
 - 5. 과세자료 열람·제출 요구 및 질문·조사
- ② 납세자보호관은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권한을 세무부서장에게 행사한다.

제3장 납세자보호 업무의 심의

제8조(안건 심의 등) ① 고충민원 등 심의는 「남원시 시세 기본 조례」 제6조에 따른 남원시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안건을 심의한다.

- 1. 고충민원 등에 대하여 세무부서와 이견이 있는 경우로서 300만원 이상인 안건
- 2. 그 밖에 납세자보호관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

제9조(위원회의 운영 등) 제8조제2항의 안건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법령에 따른다.

제4장 고충민원

제10조(고충민원 처리 기본원칙)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을 처리함에 있어서

지방세 행정 집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납세자의 고충을 적극적으로 처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고충민원의 대상) 고충민원의 대상은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세와 관련된 모든 고충을 그 대상으로 한다.

제12조(고충민원의 대상 제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고충민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제1호와 제2호의 경우 본안 심리를 거치지 아니한 각하결정 등은 고충민원의 대상에 포함한다.

1. 법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된 사항
2. 법 및 다른 법령에 따른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되어 확정된 사항
3. 다른 기관이나 자체감사결과에 따른 시정지시에 따라 처분하였거나 처분하여야 할 사항
4. 탈세제보 등 지방세 관련 고소·고발
5. 법 제10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제121조에 따른 통고처분
6. 법령에 따른 불복 및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한이 지나지 아니한 사항
7. 「민사소송법」 등 법률에 따른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로서 쟁점에 대한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아니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고충민원 대상이 아닌 사항을 고충민원으로 제기한 경우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 대상에서 제외됨을 민원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고충민원의 분류) 납세자보호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충민원을 처리한다.

1. 시장이 결정·처분한 사안인 경우
2. 시장의 부작위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안인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4조(고충민원의 신청기간) ① 제13조 각 호에 해당하는 고충민원을 신청하려는 자는 지방세 부과·징수기간 종료일 90일 전까지 할 수 있다.

② 고충민원의 대상이 중대하고 명백한 잘못이 있어 당연 무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되,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성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5년) 종료일 90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제15조(고충민원의 처리기간) ① 고충민원은 이를 접수한 날부터 14일(초일은 산입하되, 공휴일·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실 확인·위원회 심의·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의견 조취·법령자문 또는 실지조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30일의 범위에서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6조(반복 및 중복 고충민원의 처리) ① 납세자보호관은 민원인이 같은 내용의 고충민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두 번 이상 반복하여 신청한 경우 두 번째 신청은 처리 제외됨을 통지하고, 세 번째부터는 통지 없이 종결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두 번 이상 신청된 고충민원이라 하더라도 신청의 주된 이유가 당초 신청된 고충민원과 확연히 구분되고 정당한 근거 또는 사유가 있거나 당초 주장을 입증할 만한 명백한 추가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최초 신청된 고충민원으로 보아 처리한다.

③ 민원인이 같은 내용의 고충민원을 두개 이상의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에 제출하여 이송 받은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제17조(신청의 취하) 민원인은 신청한 고충에 대한 세무부서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취하할 수 있다. 이 경우 취하된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고충민원의 신청이 없었던 것으로 본다.

제18조(불이익변경금지)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민원인에게 고충민원신청 전보다 불리한 결정을 해서는 안 된다.

제19조(불복 제외대상) 고충민원에 대한 처리결과는 법 제89조에 따른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되지 않는다.

제5장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

제20조(조사기간 연장신청) ① 조사를 담당하는 세무부서장이 법 제84조제1항에 따라 조사기간을 연장하려면 납세자보호관에게 조사기간 종료 3일(공휴일·토요일 제외,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② 납세자 또는 법 제139조에 따른 납세관리인이 조사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조사기간 종료 3일 전까지 납세자보호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세범칙조사(조사유형이 전환된 경우 포함)는 조사기간 연장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21조(연장신청에 대한 결정) 납세자보호관은 제20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와 같이 결정한다.

1. 세무조사 연장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 승인
2. 세무조사 연장신청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 : 불승인

제22조(세무조사 연기신청) 세무조사 연기를 신청은 조사개시 3일 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제23조(연기신청에 대한 결정) ① 납세자보호관은 제22조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결정을 하여야 한다.

1. 세무조사 연기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 승인
 2. 세무조사 연기신청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 : 불승인
- ② 납세자보호관이 제1항제1호에 따른 승인을 하는 경우 신청인이 요구한 기간을 단축하여 승인할 수 있다.

제6장 권리보호 요청

제24조(권리보호요청 처리 기본원칙) 권리보호요청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납세자보호관은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납세자의 권리와 편익을 최대한 보호하여야 하며, 세무부서로부터 독립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제25조(고충민원과 구분) ① 권리보호요청은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고충민원과 구분된다. 다만, 신속한 후속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납세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실이 예상되어 긴급히 구제를 요청하는 경우는 제2항에 따른 권리보호요청으로 분류하여 처리한다.

- ② 권리보호요청은 주로 처분을 위한 절차 진행 중 또는 집행이 예정된 경

우에 세무공무원의 부당한 행위로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거나 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에 제출되는 민원으로 한다.

제26조(권리보호요청 대상) ① 세무조사에 대한 권리보호요청은 세무조사 진행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사공무원의 행위 등을 대상으로 한다.

1. 법령을 명백히 위반하여 조사하는 행위
2. 지방세 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없는 등 법령이 정하는 구체적 사유 없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재조사 하는 행위
3.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조사대상·과세기간·세목 등 조사 범위를 벗어나 조사하거나 조사기간을 임의로 연장하는 행위
4.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나 업무상 취득한 자료를 법령에 의하지 않고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거나 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

② 일반 지방세 행정예징에 대한 권리보호요청은 지방세 부과·징수, 체납처분 등 지방세행정 집행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다.

1. 소명자료 제출·고충민원·불복청구·체납세액 완납 등의 절차가 완료되었으나 그에 필요한 결정취소·환급·압류해제 등 후속처분을 지연하는 행위
2. 독촉절차 없이 재산을 압류하는 행위(법령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
3. 납세자가 권리구제 등의 필요에 따라 본인의 과세정보에 대해 열람 또는

제공을 요구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제공을 지연하는 행위

4.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나 업무상 취득한 자료를 법령에 따르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5. 과세자료 처리 등에 있어 지방세의 부과·징수와 관련 없는 자료 또는 소명을 무리하게 요구하는 행위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거나 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

제27조(권리보호요청 기한) 권리보호요청은 해당 처분과 관련된 지방세 부과 제척기간이 만료하기 6개월 이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제28조(권리보호요청의 처리기한) 권리보호요청은 7일(초일은 산입하되, 공휴일·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이내에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실 확인·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조회·법령자문 또는 실지조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에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14일로 한다.

제7장 납세자권리현장

제29조(납세자권리현장 제정) ① 시장은 법 제76조에 따라 납세자권리현장을 제정·고시하여 납세자에게 납세자로서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를 알려 주어야 한다.

② 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권리현장의 제정·개정 등 납세자권리현장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30조(납세자권리헌장 준수) ①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권리헌장의 내용을 숙지하고 납세자권리헌장에서 규정하는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세무부서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정기적으로 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개정 취지와 내용 등을 교육하여야 하며, 이 규정에 위반하여 납세자의 권리를 침해한 소속 공무원에게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8장 제도개선 과제 발굴

제31조(지방세 제도개선 의견) ①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 세무 상담 및 권리보호요청 등에 대하여 발생 원인을 분석하고 법령의 개정 등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여야 한다.

② 납세자보호관은 제1항에 따른 민원 발생원인 분석 이외에도 업무수행 과정에서 납세자에게 불편을 주는 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2조(제도개선 과제 관리) 납세자보호관은 제도개선 과제를 분석하여 세무부서에 법령개정을 건의하고 관리한다.

제9장 그 밖의 권리보호 업무

제33조(업무의 범위) 시장은 영 제51조의2제1호에서 제4호까지 업무 이외에도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법 제26조에 따른 납세자의 기한의 연장신청에 대한 처리

2. 법 제57조에 따른 납세자의 가산세 감면신청에 대한 처리

3. 「지방세징수법」 제25조에 따른 납세자의 징수유예 등의 신청에 대한 처리

제34조(기한의 연장신청)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기한 연장을 신청하려는 자는 납세자보호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35조(기한의 연장결정) 납세자보호관은 세무부서의 의견 및 사실 확인 결과 등을 검토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1. 기한의 연장 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 승인
2. 기한의 연장 신청인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 : 불승인

제36조(가산세의 감면 신청) 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가산세의 감면을 신청하려는 자는 납세자보호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37조(가산세의 감면 결정) 납세자보호관은 세무부서 의견 및 사실 확인 결과 등을 검토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결정을 하여야 한다.

1. 가산세 감면 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 승인
2. 가산세 감면 신청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 : 불승인

제38조(징수유예 등 신청) 「지방세징수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징수유예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105조에 따른 체납처분유예를 받으려는 자는 납세자보호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39조(징수유예 등 결정) 납세자보호관은 세무부서의 의견, 사실 확인 결과 및 납세담보의 제공 여부 등을 검토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1. 징수유예 또는 체납처분유예 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 승인

2. 징수유예 또는 체납처분유예 신청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 : 불승인
제4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원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대상 여부

- 조례 일부개정에 따라 생기는 비용의 순증가액이나 순감소액은 없으므로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해당되지 않아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비용추계서”라 함은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발의한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

남원시 공고 제2018-345호

「남원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23일

남 원 시 장

남원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안

1. 제정이유

「남원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주요내용

- 가. 목적과 정의를 규정 (안 제1조~안 제2조)
- 나. 고충민원 처리사항을 규정 (안 제3조~안 제9조)
- 다. 세무조사 기간 연장 등 처리 사항을 규정 (안 제10조~안 제14조)
- 라. 납세자 권리보호 요청 처리사항을 규정 (안 제15조~안 제20조)
- 마. 기한연장, 가산세 감면, 징수유예 등 그 밖의 권리보호 업무처리사항을 규정 (안 제21조~안 제23조)

3. 의견제출

-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8년 3월 15일까지 의견을 남원시장(참조:재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제출 사항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 55738

남원시 시청로 60(도통동) 남원시청 재정과

라. 의견 제출방법 : 서면, 팩스(063-620-6710) 및 직접방문 등

4. 기타

○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청 재정과(☎ 063-620-627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서

1. 의견제출 목록	「남원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2. 제출자	성명(명칭)	
	주 소	
3. 의 견		
4. 기 타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의견제출 및 처리)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8년 월 일

의견서 제출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전 화 :

남원시장 귀하

비 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 할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를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시 규칙 제 호

남원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원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의 시행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시중지 요구”란 납세자보호관이 세무부서장에게 일정기간 동안 처분절차 또는 세무조사의 진행 등을 일시 보류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2. “중지요구”란 납세자보호관이 세무부서장에게 처분절차 또는 세무조사의 진행 등을 중단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3. “시정요구”란 납세자보호관이 세무부서장에게 위법·부당한 처분 또는 절차에 대하여 시정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② 제1항외의 용어에 관하여는 이 규칙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세 관계법령 등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예에 따른다.

제2장 고충민원

제3조(고충민원서류의 접수) ① 고충민원은 납세자보호관이 별지 제1호서식의 고충민원신청서로 접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구술 등 다른 방법으로 제기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장 등으로부터 이송되는 고충민원은 납세자보호관이 접수한다.

③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이 접수되면 별지 제2호 서식의 고충민원 접수 및 처리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4조(고충민원의 처리기간) 납세자보호관은 조례 제15조제2항에 따라 처리기한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고충민원 처리기한 연장통지서에 따라 기한연장사유, 처리예정기한 등을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고충민원 처리안내) 납세자보호관이 상담 후 고충민원을 접수하는 경우에는 민원인에게 고충민원 처리에 소요되는 예정기한, 처리절차 등을 알려주어야 한다.

제6조(세무부서의 의견조회) ① 고충민원을 접수한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내용을 검토하여 세무부서의 의견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고충민원에 대한 의견조회서에 고충민원서류사본을 붙여하여 세무부서장에게 의견을 조회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의견조회를 요청받은 세무부서장은 의견서를 작성한 후 당초 처분에 관한 서류사본을 붙여 의견조회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5호 서식의 고충민원 의견(처리결과) 통보서에 그 의견을, 직권시정 등을 한 경우에는 그 처리 결과를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사실 확인 및 과세자료 제출·열람) ①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 신청내용과 세무부서의 고충민원에 대한 의견 회보내용 등을 검토한 결과 필요한 경우에는 사실 확인을 할 수 있다.

② 납세자보호관은 제1항에 따라 사실을 확인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

에 따라 질문하거나 조사할 수 있다.

1. 세무부서 등의 직원 또는 민원인·관련인 등의 의견청취
2. 세무부서 등이 보유하고 있는 과세자료 또는 민원인·관련인 등이 소지하는 장부·서류·그 밖의 자료를 열람, 제출 요구
3. 그 밖에 필요한 물건, 사람, 장소 및 상황 등의 확인

③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과세자료 열람 및 제출이 필요한 경우 별지 제6호 서식의 과세자료 열람·제출 요구서에 따라 세무부서 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세자료 열람 또는 제출을 요구받은 세무부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8조(증빙자료의 수집) ①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 접수 시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증명자료를 확인하거나 직접 수집할 수 있음을 민원인에게 알리고 고충민원신청서에 서명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 처리에 필요한 증명자료 중 행정기관 발급자료 및 지방세 전산자료 등을 직접 수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증명자료를 직접 수집할 수 없어 부득이하게 민원인에게 증명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제9조(처리결과의 통지) ① 고충민원을 접수한 납세자보호관은 제7조 및 제8조의 과정 등을 거쳐 검토한 결과 시정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 별지 제7호 서식의 고충민원 처리결과 통지서에 따라 그 처리결과를 납세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② 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의 고충민원에 대해 사실관계를 검토한 결과 시정

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지 제8호 서식의 시정요구서에 따라 세무부서장에게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8조에 따라 남원시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거쳐 고충민원을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 서식의 고충민원 심의결과 통보서에 의결서를 붙여 세무부서장에게 심의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정 요구를 받은 세무부서장은 그 수용여부를 별지 제10호 서식의 고충민원 시정요구에 대한 결과통보서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시정요구에 대한 결과를 통보받은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 처리결과를 별지 제7호 서식의 고충민원 처리결과 통지서에 따라 납세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3장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

제10조(조사기간 연장신청) ① 세무부서장이 조례 제20조제1항에 따라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1)서식의 세무조사 기간연장 신청서에 따라 관련서류 등을 붙여 납세자보호관에게 세무조사 기간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납세자가 조례 제20조제2항에 따라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2)서식에 따라 관련서류 등을 붙여 납세자보호관에게 세무조사 기간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1조(연장신청 의견청취 등) ① 세무조사 기간 연장 신청을 접수한 납세자보호

관은 세무부서장에게 별지 제12호 서식의 세무조사 기간연장 신청 접수사실 통보서에 따라 접수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접수 사실을 통보받은 세무부서장은 통보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관련 의견을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라 세무조사 기간연장에 대한 의견서로 납세자보호관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납세자보호관의 연장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세무조사 종료를 보류하여야 한다.

제12조(조사기간 연장 여부의 통보) ① 납세자보호관은 조례 제21조에 따른 결정이 있는 경우 그 결정사항을 별지 제14호 서식의 세무조사 기간연장 통보서에 따라 세무부서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② 세무부서장은 세무조사기간 연장통보서를 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15호 서식의 세무조사 기간연장 처리결과 통보서에 따라 그 처리결과를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납세자보호관은 처리결과를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별지 제45호 서식에 따라 민원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연기신청 의견청취 등) ① 세무조사 연기신청을 접수한 납세자보호관은 세무부서장에게 별지 제16호 서식의 세무조사 연기신청 접수통지서에 따라 접수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접수 사실을 통보받은 세무부서장은 통보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관련의견을 별지 제17호 서식의 세무조사 연기신청에 대한 의견서로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납세자보호관의 연기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세무조사 착수를 보류하여야 한다.

제14조(연기신청 결정의 통보) ① 납세자보호관은 조례 제23조에 따른 결정이 있

는 경우 별지 제18호 서식의 지방세 세무조사 연기 통보서에 따라 세무부서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한다.

② 세무부서장은 세무조사 연기 통보서를 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19호 서식의 지방세 세무조사 연기 처리결과 통보서에 따라 그 처리결과를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납세자보호관은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시행규칙 제29조제3항에 따른 별지 제42호 서식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제4장 권리보호 요청

제15조(권리보호요청의 접수) ① 권리보호요청은 납세자의 요청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이 별지 제20호 서식의 권리보호요청 신청서로 접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구술 등 다른 방법으로 접수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장 등으로부터 이송되는 권리보호요청은 납세자보호관이 접수한다.

③ 납세자보호관은 권리보호요청이 접수되면 별지 제21호 서식의 권리보호요청 접수 및 처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16조(권리보호요청의 처리기간 연장 통지) 납세자보호관은 권리보호요청을 7일 이내에 처리할 수 없는 경우 권리보호요청 처리기간이 연장되었음을 별지 제22호 서식의 권리보호요청 처리결과 연장통지서에 따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권리보호요청의 처리절차) ① 권리보호요청을 받은 납세자보호관은 제

18조 및 제19조의 과정 등을 거쳐 검토한 결과 시정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23호 서식의 권리보호요청 처리결과 통지서에 따라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② 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의 권리보호요청(조례 제26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3호는 제외한다)에 대해 사실관계를 검토한 결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지 제24호 서식의 권리보호요청 결과에 따른 시정요구서에 따라 세무부서장에게 권리보호요청 결과에 따른 시정요구를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정 요구를 받은 세무부서장은 별지 제25호 서식의 권리보호요청에 대한 결과통보서에 따라 시정요구에 대한 결과를 납세자보호관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④ 납세자보호관은 세무부서장이 시정요구를 수용하는 경우 별지 제26호 서식에 따라 권리보호요청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권리보호요청 처리 협조) ① 납세자보호관은 권리보호요청을 처리하기 위하여 세무부서장의 의견 또는 관련 자료가 필요한 경우 별지 제27호 서식의 권리보호요청에 대한 의견조회서에 따라 세무부서장에게 의견 및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세무부서장은 별지 제28호 서식의 권리보호요청에 대한 의견(자료요청) 회보서를 지체 없이 회신하여 권리보호요청이 신속하게 처리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제19조(사실관계 확인) ① 납세자보호관은 권리보호요청을 처리하기 위하여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세무부서장에게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② 납세자보호관은 권리보호요청과 관련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관련 공무원에게 직접 질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련 공무원은 성실하게 답변하여야 한다.

③ 납세자보호관은 권리보호요청과 관련하여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해당 납세자에게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20조(지방세 관계법령 등에 위반된 조사 및 재조사에 대한 권리보호요청 처

리) ① 납세자보호관은 세무조사 사전통지서를 받은 납세자로부터 조례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사 또는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재조사(이하 “위반된 조사 등”이라 한다)임을 주장하는 권리보호요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서류 등을 참고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세무조사 사전통지서
2. 세무조사 결과통지서
3. 조사계획서
4. 조사이력사항
5. 그 밖에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

② 세무부서장은 납세자보호관이 제1항에 따른 위반된 조사 등의 여부에 대한 검토를 위해 납세자보호관이 세무조사 관련 자료요구서(별지 제29호 서식)에 따라 관련 서류를 요청하는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

③ 납세자보호관은 세무조사 착수 전일까지 위반된 조사 등의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④ 납세자보호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세무조사 착수 전일까지 위반된 조사 등의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판단이 있을 때까지 세무

부서장에게 별지 제30호 서식의 세무조사 착수중지 요청서에 따라 요청하여야 하며 세무부서장은 세무조사 착수를 연기하여야 한다.

⑤ 납세자보호관은 조사 착수 후 납세자가 위반된 조사 등임을 주장하는 경우 납세자가 제시하는 종전의 세무조사사전통지서 등 관련 서류, 정황 및 지방세 관계법령을 검토하여 납세자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그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세무부서장에게 별지 제31호 서식의 세무조사 일시중지 요청서에 따라 해당 조사의 일시 중지를 요청하여야 하며 세무부서장은 세무조사를 일시 중지하여야 한다.

⑥ 납세자보호관은 그 결과 및 조치사항을 제18조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처리결과를 세무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제4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범칙조사, 세수일실·조세포탈의 여지가 있는 등 특별한 경우로서 세무부서장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조사 착수 또는 조사 진행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세무조사 일시 중지를 요청하지 않는다.

⑧ 제4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세무조사가 일시 중지된 경우 중지된 기간만큼 조사기간이 연장된다.

제5장 그 밖의 권리보호 업무

제21조(기한의 연장) ① 조례 제34조에 따라 기한의 연장 신청서를 접수한 납세자보호관은 지체 없이 별지 제32호 서식에 따라, 납부기한 연장 신청서는 별지 제33호 서식에 따라 세무부서장에게 접수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

만, 기한만료 3일 전 접수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② 납세자보호관으로부터 기한의 연장 신청사실을 통보 받은 세무부서장은 통보 받은 날부터 1일 이내에 별지 제34호 서식에 따라, 납부기한 연장 신청의 경우에는 별지 제35호 서식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에게 해당 신청에 대한 검토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납세자보호관은 조례 제35조에 따라 기한의 연장 승인 여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세무부서장에게 별지 제36호 서식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으로부터 기한의 연장 승인 결정을 통보받은 세무부서장은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납세자보호관에게 별지 제37호 서식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⑤ 납세자보호관은 제1항에 따른 기한 연장 신청에 대한 승인 여부통지를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 납부기한 연장 승인 여부 통지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2조(가산세의 감면) ① 가산세 감면 신청을 접수한 납세자보호관은 지체 없이 세무부서장에게 별지 제38호 서식에 따라 가산세 감면신청 접수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납세자보호관으로부터 가산세 감면신청 접수사실을 통보 받은 세무부서장은 통보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39호 서식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에게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납세자보호관은 조례 제37조에 따라 가산세 감면의 승인 여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세무부서장에게 별지 제40호 서식에 따라 통보하여

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으로부터 가산세 감면의 승인 결정을 통보받은 세무부서장은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결과를 납세자보호관에게 별지 제41호 서식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⑤ 납세자보호관은 조례 제37조에 따른 가산세 감면의 결과(승인여부)를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3조(징수유예 등) ① 징수유예 또는 체납처분유예 신청을 접수한 납세자보호관은 지체 없이 세무부서장에게 별지 제42호 서식에 따라 징수유예 신청 접수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납세자보호관으로부터 징수유예 또는 체납처분 유예 신청 접수사실을 통보 받은 세무부서장은 통보 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43호 서식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에게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세무부서장은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 및 법 제105조제3항에 따른 납세담보의 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납세담보 제공 여부 등에 대한 의견을 통보한다.

③ 납세자보호관은 조례 제39조에 따라 징수유예 또는 체납처분 승인 여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세무부서장에게 별지 제44호 서식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으로부터 징수유예 또는 체납처분 승인 결정을 통보받은 세무부서장은 납세담보를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납세자보호관에게 별지 제45호 서식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⑤ 납세자보호관은 조례 제38조에 따른 징수유예 또는 체납처분 유예 여부를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27호 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납세담보의 제공을 위하여 기한 내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납세담보 제공 받은 후 지체 없이 통보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남원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1호 서식]

고충민원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영업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전자우편주소
고충내용	※ 작성할 사항이 많을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할 수 있음	

「남원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제3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고충민원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_____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남원시장 귀하

위임장

위 신청인 본인은 아래의 위임받은 자에게 고충민원의 신청을 위임합니다.

위임자(신청인) _____ (서명 또는 인)
위임받은 자 _____ (서명 또는 인)

위임 받은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위임자와의 관계
	주소	전화번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직원이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위임한 사람) _____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남원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2호 서식]

고충민원 접수 및 처리대장

연번	접수일	납세자			민원내용	처리여부			비고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영업소)		처리 결과	결과 통지일	처리 기간	

297mm×210mm(백상지 80g/m²)

■ 남원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3호 서식]

행정기관명

수신

(경유)

제목 고충민원 처리기간 연장통지서

「남원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귀하(귀 법인)가 ○○.○○.○○ 제출한 고충민원의 처리기한을 아래와 같이 연장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납 세 자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영업소)			
당초처리기간		. . .	처리에정기한	. . .
기한연장사유				

끝.

발 신 명 의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mm×297mm[백상지(80g/㎡)]

■ 남원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4호 서식]

행정기관명

수신 ○○과장

(경유)

제목 고충민원에 대한 의견조회

「남원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충민원이 제기되어 귀 부서의 의견을 조회하고자 하니 ○○.○○.○○까지 당초 처분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당해 고충의 내용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권시정하고 그 결과를 ○○.○○.○○까지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세자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영업소)			
고충내용				

붙임 고충민원서 사본 1부. 끝.

발신명의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

■ 남원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5호 서식]

행정기관명

수신 납세자보호관
(경유)

제목 **고충민원 의견 및 처리결과 통보**

「남원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아래의 고충민원에 대한 의견 및 처리결과를 다음과 같이 통보합니다.

납세자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신청일자	. . .	처리일자	. . .
고충내용 (요약)				
00과 의견	검토의견			
	처리결과 (직권시정 하였을 경우)			

붙임 고충민원서류 사본 1부. 끝.

발신명의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

■남원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6호 서식]

행정기관명

수신 ○○과장

(경유)

제목 과세자료 열람·제출 요구

아래 민원인으로부터 고충민원이 제기되어 「남원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 따라 귀 부서의 과세자료에 대하여 열람·제출을 요구하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 세 자	성 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 소 (영업소)		신청일자	. . .
고 충 내 용				
요 구 자 료				

끝.

발 신 명 의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

■ 남원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7호 서식]

행정기관명

수신

(경유)

제목 **고충민원 처리결과 통지**

귀하(귀 법인)가 ○○.○○.○○ 제출한 고충민원에 대하여 「남원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처리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납 세 자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 록번호)	
	주소 (영업소)			
민원내용				
처리내용				

끝.

발 신 명 의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

■ 남원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8호 서식]

행정기관명

수신 ○○과장

(경유)

제목 **고충민원 검토(의결)결과에 따른 시정요구**

「남원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아래의 사항을 통보하오니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 세 자	성명(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영업소)			
고충내용				
시정요구 내용				

(붙임: 고충민원의결서) 끝.

발 신 명 의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mm×297mm[백상지(80g/㎡)]

■ 남원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9호 서식]

행정기관명

수신 ○○과장

(경유)

제목 **고충민원 심의결과 통보**

「남원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2항 단서 규정에 따라 아래의 고충민원에 대한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

납 세 자	성명(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영업소)			
고충민원 내용				
의결 내용				

붙임 의결서 1부. 끝.

발 신 명 의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

■ 남원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10호 서식]

행정기관명

수신 납세자보호관

(경유)

제목 고충민원 시정요구에 대한 결과통보

「남원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3항에 따라 아래의 권리 보호요청 사항에 대한 결과를 통보합니다.

납 세 자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영업소)			
고충내용				
처 리 결 과	수용여부	여 / 부		
	처리사유			

끝.

발신명의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mm×297mm[백상지(80g/㎡)]

■ 남원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11호(1) 서식]

행정기관명

수신 납세자보호관

(경유)

제목 지방세 세무조사 기간연장 신청서 제출

「남원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방세 세무조사 기간의 연장을 신청합니다.

납세자	성명(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영업소)			
신청내용	조사대상 세목			
	당초 조사기간		~	
	연장신청 조사기간		~	
	연장신청 사유			

끝.

발신명의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

■ 남원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11호(2)서식]

세무조사기간 연장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영업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전자우편주소	
연장신청 사유			

「○○○시·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세무조사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00시장·군수 귀하

위임장

위 신청인 본인은 아래의 위임받은 자에게 세무조사기간 연장의 신청을 위임합니다.

위임자(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위임받은 자 (서명 또는 인)

위임 받으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위임자와의 관 계
	주소	전화 번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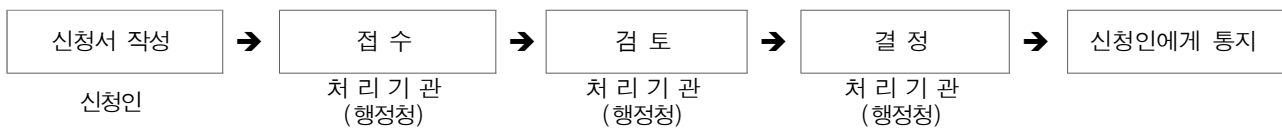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직원이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위임한 사람) (서명 또는 인)

처리 절차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남원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12호 서식]

행정기관명

수신 ○○과장

(경유)

제목 지방세 세무조사 기간연장 신청 접수 사실 통보

「남원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지방세 세무조사 기간연장 신청 접수 사실을 아래와 같이 통보하오니 기간연장 신청 내용을 검토한 후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세자	성명(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영업소)			
신청내용	당초 조사기간		~	
	연장신청 조사기간		~	
	연장신청 사유			

붙임 지방세 세무조사 기간연장 신청서 1부. 끝.

발신명의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

■ 남원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13호 서식]

행정기관명

수신 납세자보호관

(경유)

제목 지방세 세무조사 기간연장 신청에 대한 의견 송부

「남원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라 지방세 세무조사 연장 신청 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아래와 같이 송부합니다.

납세자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영업소)			
신청내용	당초 조사기간		~	
	연장신청 조사기간		~	
	연장신청 사유			
검토의견	연장 여부			
	사유			

끝.

발신명의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

■ 남원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14호 서식]

행정기관명

수신 ○○과장

(경유)

제목 지방세 세무조사 기간연장 신청에 대한 결정사항 통보

「남원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아래 납세자가 신청한 지방세 세무조사 기간연장 신청에 대해 그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다음과 같이 통보합니다.

납세자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영업소)			
신청내용	당초 조사기간		~	
	연장신청 조사기간		~	
	연장신청 사유			
결정사항	연장 여부			
	사유			
	연장된 조사기간		~	

끝.

발신명의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

■ 남원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15호 서식]

행정기관명

수신 납세자보호관

(경유)

제목 지방세 세무조사 기간연장 처리결과 통보

「남원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아래 납세자가 신청한 지방세 세무조사 기간연장 신청에 대해 그 처리결과를 다음과 같이 통보합니다.

납세자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영업소)			
신청내용	당초 조사기간		~	
	연장신청 조사기간		~	
	연장신청 사유			
처리사항	연장 여부			
	사유			
	연장된 조사기간		~	

끝.

발신명의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

■ 남원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16호 서식]

행정기관명

수신 ○○과장

(경유)

제목 지방세 세무조사 연기 신청 접수 통지

「남원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세무조사 연기신청 접수사항을 아래와 같이 통지합니다.

납 세 자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영업소)			
접 수 사 항	당초 조사기간			
	연기 신청기간			
	연기 신청사유			

끝.

발 신 명 의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mm×297mm[백상지(80g/㎡)]

■ 남원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17호 서식]

행정기관명

수신 ○○과장

(경유)

제목 지방세 세무조사 연기 신청에 따른 의견 제출

「남원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세무조사 연기신청에 대한 의견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납 세 자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영업소)		
연기신청 기간			
○○과 의견			

끝.

발 신 명 의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mm×297mm[백상지(80g/㎡)]

■ 남원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18호 서식]

행정기관명

수신 ○○과장

(경유)

제목 지방세 세무조사기간 연기 통보서

「남원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세무조사 연기신청 결과를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납 세 자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영업소)		
신청 내용	당초조사기간		
	연기신청기간		
	연기신청사유		
결정 사항	연기여부		
	연기된 조사기간		
	결정사유		

끝.

발 신 명 의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mm×297mm[백상지(80g/㎡)]

■ 남원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19호 서식]

행정기관명

수신 ○○과장

(경유)

제목 지방세 세무조사 연기 처리결과 통보서

「남원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에 규정에 따라 세무조사 연기신청 처리결과를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납 세 자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영업소)			
신청 내용	당초조사기간			
	연기신청기간			
	연기신청사유			
처리결과				

끝.

발신명의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mm×297mm[백상지(80g/㎡)]

■ 남원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20호 서식]

권리보호요청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영업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전자우편주소		
권리보호 대상	① 요청기관	② 세무조사	③ 세정행정	④ 체납처분

⑤ 권리보호

요청내용 ※ 작성할 사항이 많을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합니다.

「남원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권리 보호요청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남원시장 귀하

위임장

위 신청인 본인은 아래의 위임받은 자에게 고충민원의 신청을 위임합니다.

위임자(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위임받은 자

(서명 또는 인)

위임 받은 자	성명	생년월일	위임자와의 관계
	주소	전화번호	

⑥ 첨부서류

1. 예고 통지서 등 주무서서로부터 통지 받은 서류
2. 권리보호요청 내용을 증명하거나 보완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직원이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위임한 사람)

(서명 또는 인)

297mm×210mm(백상지 80g/㎡)

■ 남원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21호 서식]

권리보호요청 접수 및 처리대장

연번	접수일	납세자			요청사유	처리여부			비고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영업소)		처리 결과	결과 통지일	처리 기간	

297mm×210mm(백상지 80g/m²)

■ 남원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22호 서식]

행정기관명

수신
(경유)

제목 **권리보호요청 처리기간 연장통지**

귀하가 ○○.○○.○○ 제출한 권리보호요청 신청에 대하여 「남원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처리기간이 다음과 같이 연장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납 세 자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영업소)		
권리보호요청 내용			
처 리 기 간 연 장	기간연장	당초기간 :	연장기간 :
	연장 사유		

끝.

발 신 명 의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mm×297mm[백상지(80g/㎡)]

■ 남원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23호 서식]

행정기관명

수신
(경유)

제목 권리보호요청 처리결과 통지

귀하가 ○○.○○.○○ 제출한 권리보호요청 신청서에 대하여 「남원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납 세 자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영업소)			
권리보호요청 내용				
처리내용				
처리사유				

끝.

발 신 명 의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mm×297mm[백상지(80g/㎡)]

■ 남원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24호 서식]

행정기관명

수신 ○○과장

(경유)

제목 권리보호요청 결과에 따른 시정요구

「남원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에 따라 아래의 사항을 통보하오니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 세 자	성명(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영업소)			
권리보호요청 내용				
납세자 권리침해 행위				
시정요구 내용				

끝.

발 신 명 의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mm×297mm[백상지(80g/㎡)]

■ 남원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25호 서식]

행정기관명

수신 납세자보호관

(경유)

제목 권리보호요청 시정요구에 대한 결과통보

「남원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3항에 따라 아래의 권리보호요청 사항에 대한 결과를 통보합니다.

납 세 자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영업소)	
권리보호요청 내용		
처 리 결 과	수용여부	여 / 부
	처리사유	

끝.

발 신 명 의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mm×297mm[백상지(80g/㎡)]

■ 남원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26호 서식]

행정기관명

수신
(경유)

제목 권리보호요청 처리결과 통지

「남원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4항에 따라 아래의 권리보호요청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알려드립니다.

납 세 자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영업소)			
권리보호요청 내용				
처리결과				
처리사유				

끝.

발 신 명 의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mm×297mm[백상지(80g/㎡)]

■ 남원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27호 서식]

행정기관명

수신 ○○과장

(경유)

제목 권리보호요청에 대한 의견조회서

「남원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라 권리보호 요청이 접수되어 귀 부서의 의견 및 자료를 요청하니 ○○.○○.○○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 세 자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영업소)			
권리보호요청 내용				
필요한 자료 명세				

붙임 납세자 권리보호요청 신청서 1부. 끝.

발신명의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mm×297mm[백상지(80g/㎡)]

■ 남원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28호 서식]

행정기관명

수신 납세자보호관

(경유)

제목 권리보호요청에 대한 검토의견 회신

「남원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에 따라 아래의 권리보호요청에 대한 검토의견을 송부합니다.

납 세 자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영업소)			
권리보호요청내용				
○○과 검토의견				

끝.

발신명의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mm×297mm[백상지(80g/㎡)]

■ 남원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29호 서식]

행정기관명

수신 ○○과장

(경유)

제목 **세무조사 관련 자료요구서**

「남원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제20조제2항에 따라 아래의 세무조사와 관련한 자료를 요청하오니 ○○.○○.○○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 세 자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영업소)	
필요한 자료 명세	1 .조사대상세목	
	2 .조사대상기간	
	3 .조 사 사 유	
	4 .기 타	

끝.

발 신 명 의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mm×297mm[백상지(80g/㎡)]

■ 남원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30호서식]

행정기관명

수신 ○○과장

(경유)

제목 세무조사 착수 중지 요청

「남원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제20조제4항에 따라 아래 세무 조사의 적법성 여부를 판단하고자 하니 세무조사를 착수 중지할 것을 요청합니다.

납세자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영업소)			
조사기간			조사대상 과세년도	
조사반			조사유형	
세무조사 중지요청 사유				
세무조사 중지기간				

끝.

발신명의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

■ 남원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31호 서식]

행정기관명

수신 ○○과장

(경유)

제목 세무조사 일시중지 요청

「남원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제20조제5항에 따라 아래 세무조사의 적법성 여부를 판단하고자 하니 세무조사를 일시중지할 것을 요청합니다.

납세자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영업소)			
조사기간			조사대상 과세년도	
조사반			조사유형	
세무조사 일시중지 요청사유				
세무조사 중지기간				

끝.

발신명의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

■ 남원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별지 제32호 서식]

행정기관명

수신 ○○과장

(경유)

제목 지방세 기한연장 신청 접수 통보

「남원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방세 기한연장 신청이 접수된 사실을 통보합니다.

납세자	성명(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영업소)		
신청내용	기한연장 대상		
	당초 기한 년 월 일까지	연장을 받으려는 기한 년 월 일까지	
	연장 신청 사유		

끝.

발신명의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m²)

■ 남원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33호 서식]

행정기관명

수신 ○○과장

(경유)

제목 지방세 납부 기한연장 신청 접수 통보

「남원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방세 납부기한연장 신청이 접수된 사실을 통보합니다.

납세자	성명(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영업소)			

납부기한을 연장 받을 지방세의 내용

주요세목	과세물건(대상)	납부기한	세액	신청금액
연장 받으려는 기한	년 월 일까지			
연장 신청 사유				

끝.

발신명의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10mm×297mm(백상지 80g/㎡)

■ 남원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34호 서식]

행정기관명

수신 납세자보호관

(경유)

제목 지방세 기한 연장 신청에 대한 의견 통보

「남원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라 지방세 기한 연장 신청에 대한 의견을 통보합니다.

납세자	성명(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영업소)			
의견	기한연장 대상			
	결정사유			
	연장 기한	년	월	일 까지(일간)

끝.

발신명의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

■ 남원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35호 서식]

행정기관명

수신 납세자보호관

(경유)

제목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신청에 대한 의견 통보

「남원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라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신청에 대한 의견을 통보합니다.

납세자	성명(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영업소)				
의견	승인 여부				
	연장 기한	년	월	일	까지(일간)
	승인(불승인) 사유				
	분납기한 및 금액	횟수	주요세목	분납기한	분납금액
		1회			
2회					
3회					

끝.

발신명의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J210mm×297mm(백상지 80g/㎡)

■ 남원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36호 서식]

행정기관명

수신 ○○과장

(경유)

제목 지방세 () 기한연장 승인 여부 통지

「남원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귀하(귀 법인)의 지방세 () 기한 연장 신청에 대한 승인 여부를 다음과 같이 통지합니다.

납세자	성명(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영업소)			
통지내역	기한연장 대상			
	당초기한			
	승인여부			
	연장 기한	년	월	일 까지(일간)
	승인(불승인)사유			

끝.

발 신 명 의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

■ 남원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37호 서식]

행정기관명

수신 납세자보호관
(경유)

제목 지방세 기한 연장 신청에 대한 결과 통보

「남원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제21조제4항에 따라 지방세 기한 연장 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보합니다.

납세자	성명(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영업소)			
의견	기한연장 대상			
	결정사유			
	연장 기한	년	월	일 까지(일간)

끝.

발신명의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

■ 남원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38호 서식]

행정기관명

수신 ○○과장
(경유)

제목 지방세 가산세의 감면 신청 접수 통보

「남원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세 가산세의 감면 신청 내역을 다음과 같이 통보합니다.

납세자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영업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전자우편주소

신청 내용	사유 발생일		
	감면 등을 받으려는 가산세와 관계되는 세목과 부과연월	세	년 월
	감면 등을 받으려는 가산세의 종류와 세액	가산세	원
	의무를 이행할 수 없었던 사유(구체적으로 작성하며, 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기재))		

끝.

발신명의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m²)

■ 남원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39호 서식]

행정기관명

수신 납세자보호관

(경유)

제목 지방세 가산세의 감면 신청에 대한 의견서 통보

「남원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제22조제2항에 따라 지방세 가산세의 감면 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다음과 같이 통보합니다.

납세자	성명(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영업소)			
감면 여부 의견				
감면(감면불가) 사유				
감면 승인할 가산세의 종류와 세액		가산세	원	
감면할 가산세와 관계되는 세목과 부과내역		세	년도	월 원

끝.

발신명의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

■ 남원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40호 서식]

행정기관명

수신 ○○과장

(경유)

제목 지방세 가산세의 감면 등의 결과(승인 여부) 통보

「남원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세 가산세의 감면 등의 결과(승인 여부)를 다음과 같이 통보합니다.

납세자	성명(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영업소)			
감면 여부(승인 여부)				
감면(감면불가) 사유				
감면 승인된 가산세의 종류와 세액		가산세		원
감면된 가산세와 관계되는 세목과 부과내역		세	년도	월 원

끝.

발신명의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

■ 남원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41호 서식]

행정기관명

수신 납세자보호관

(경유)

제목 지방세 가산세의 감면 등의 처리 결과 통보

「남원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제22조제4항에 따라 지방세 가산세의 감면 등의 승인에 따른 처리 결과를 다음과 같이 통보합니다.

납세자	성명(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영업소)			
감면 처리된 가산세의 종류와 세액		가산세 원		
감면된 가산세와 관계되는 세목과 부과내역		세	년도	월 원
처리연월일		년	월	일

끝.

발신명의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

■ 남원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42호 서식]

행정기관명

수신 ○○과장

(경유)

제목 [] 징수유예등 신청 접수 통보
 [] 체납처분유예

「남원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방세 징수유예(체납처분유예) 신청이 접수된 사실을 통보합니다.

납세자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영업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전자우편주소

	세목	과세연도	과세번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계	지방세	가산금			
신청 내용	징수유예등(체납처분유예)을 받으려는 사유								
	징수유예등(체납처분유예)을 받으려는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납부기한 및 분납금액								
	횟수	연도	세목	납부기한	분납금액 (A+B)	지방세(A)	가산금(B)		
	1회								
	2회								
	3회								

붙임 신청서 사본 1부. 끝.

발 신 명 의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 남원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43호 서식]

행정기관명

수신 납세자보호관
(경유)

제 목 [] 징수유예등 신청에 대한 의견 통보
[] 체납처분유예

「남원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제23조제2항에 따라 지방세 징수유예(체납처분유예) 신청에 대한 의견을 다음과 같이 통보합니다.

납세자	성명(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영업소)	
징수유예등(체납처분유예) 여부 의견		
승인(기각) 사유		

끝.

발 신 명 의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

■ 남원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45호서식]

행정기관명

수신 납세자보호관

(경유)

제목 징수유예(체납처분유예) 처리 결과 통보

「남원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제23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세 징수유예(체납처분유예) 승인에 따른 처리 결과를 다음과 같이 통보합니다.

납세자	성명(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영업소)								
징수유예(체납처분유예) 처리된 세목과 세액									
징수유예(체납처분유예)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처리연월일		년		월	일				

발신명의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

남원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안에
대한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대상 여부

- 조례 일부개정예 따라 생기는 비용의 순증가액이나 순감소액은 없으므로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해당되지 않아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비용추계서”라 함은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발의한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